

#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- 429호

“2025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(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)”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6. 9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## 2025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(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) 공고

### 1 지원 개요

#### □ 지원 개요

-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대규모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보증제도 운영으로 해상풍력 투자 활성화 도모

#### □ 지원 기관

- 신용보증기금(이하 “보증사업기관”)
  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청기업의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사업기관에 추천(대상사업 확인서 발급)

#### □ 지원 대상 :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시설자금 PF대출 금액

-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
-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범위는 해상풍력 발전설비 조성에 필요한 PF대출금액의 60%이내(시설자금에 한함)
  - ※ 단, 보증지원 대출금액은 선순위 대출분에 한하며, 시설자금은 발전 및 송전 설비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공사비, 보상비, 부대비, 운영설비비,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 구성됨. 다만, 건설이자를 포함한 금융부대비용과 명백히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함

**보증지원 규모 : 총 4,000억원**

**보증비율 :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% 이내**

- 최고 보증지원 한도 : 4,000억원/건

**보증료**

- (기준요율)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

최저 보증료율	최고 보증료율
연 0.3%	연 1.6%

- (수납시기) 보증서 발급 시 수납

※ 보증기한 1년 초과시 1년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분할수납 가능

**선정기준**

- (대상사업) 신청 프로젝트의 해상풍력 보급효과, 사업 준비성 등 지원대상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확인서 발급
  - 추천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의 내규에 따르며, 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 산출
- (보증심사) 대상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을 신청한 기업의 신용도, 사업성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평가
  - 평가등급은 보증사업기관의 내규에 따르며, 신용조사 등을 거쳐 등급 산출

**지원 제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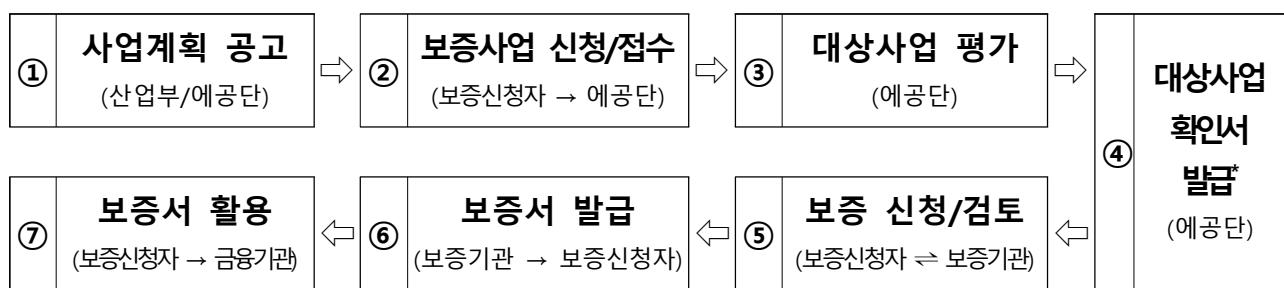
- 보증사업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

구 분	대 상
보증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보증사업기관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하여 보증사업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등</li></ul>
보증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휴업중인 기업, 대출금 연체기업</li><li>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, 허위자료 제출기업</li><li>• 보증사업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업 등</li></ul>

## 2

지원절차

- 신청방법** : 이메일 접수 (kde0827@energy.or.kr)
- 신청기간** : '25. 7. 9.(수) ~ 상시 \* 예산 소진 시 종료

 **지원절차**

※ 대상사업 확인서는 신청일(서류 보완기간 제외) 부터 30일 이내에 발급 (단, 불가피한 경우 연장될 수 있음)

## &lt; 단계별 진행 세부 내용 &gt;

구 분	단계별	주요내용	
보증사업 기관	한국에너지 공단(센터)	▶ 보증사업 신청/접수  ▶ 보증 상담  ▶ 현장조사  ▶ 심사/승인  ▶ 보증서 발급	▶ 보증사업 신청/접수 및 대상기업 확인, 보증사업기관에 추천  ▶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상풍력 프로젝트 사업내용, 보증금지 · 제한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제출 안내  ▶ 사업자·대주단이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해 예비검토 후 현장조사 실시  ▶ 사업전망, 신용도,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▶ 보증약정 후 금융기관(채권기관)에 보증서 발송
	은행 등 금융기관	▶ 대출약정/ 실행	▶ 보증사업기관으로부터 보증서 수신 후 대출 약정/실행 취급

### 3 유의사항

- 보증사업기관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금지 또는 제한
- 보증서 발급은 보증사업기관이 사업성 및 신용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대상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
- 보증심사 시 보증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보증사업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름
- 발급된 대상사업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함
- 대상사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보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, 유효 기간 종료일부터 2년간 보증사업 신청이 제한됨  
※ 단, 보증사업 신청 제한은 대상사업 확인서가 발행된 사업에 한함

### 4 기타사항
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”과 “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재생에너지 센터 공고)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보증업무는 보증사업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상세내용 문의
  - (대상확인)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(052-920-0723)
  - (보증심사)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혁신성장금융센터 (053-430-4349)

## 5

제출서류 **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평가(한국에너지공단 제출)**

서류 목록	비 고
대상사업 확인 신청서 [별첨1]	
사업내역서 [별첨2]	필수
발전사업 허가증 (임시허가증 불인정)	
사업자등록증	
중소(중견기업) 확인서	해당 시
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개발 과제 확인서	

\* 필수서류(신청서, 사업내역서, 발전사업허가증, 사업자등록증 등) 누락시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[별첨2] 사업내역서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는 평가에 적용

 **보증서 발급(신용보증기금 제출)**

구 분	서류 목록	비 고
정보제공동의서 <sup>주1)</sup>	고객정보 활용동의서	
기업개요 <sup>주2)</sup>	기업개요표 또는 사업계획서	필수

주1) 금융정보, 세무회계정보 등 보증사업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보증신청 기업의 동의를 받아 보증사업기관에서 수집하여 검토함

주2) 보증사업기관 소정 양식

주3) 보증신청시 보증조사 필요자료(상세) 추후 안내 예정